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-829호

**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
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수립(안),
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
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 공고**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08(2023.9.14)호로 지구단위계획 변경·결정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 (목동4단지 아파트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하오니,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05월 02일

양 천 구 청 장

- I. 공람기간 : 2024년 05월 02일 ~ 2024년 6월 03일
- II. 공람장소 : 양천구청 재건축사업과(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, 6층 ☎02-2620-3456)
- III. 의견제출처 :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
- IV.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
 -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 - 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
 - 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조서

■ 용도지역 총괄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합 계		4,368,463.0	—	4,368,463.0	100.0	—
주거 지역	소 계	3,168,887.9	—	3,168,887.9	72.5	—
	제1종일반주거지역	261,190.4	감) 11,207.6	249,982.8	5.7	—
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 이하)	237,766.1	—	237,766.1	5.4	—
	제2종일반주거지역	606,609.2	—	606,609.2	13.9	—
	제3종일반주거지역	2,063,322.2	증) 11,207.6	2,074,529.8	47.5	—
중심 지역	소 계	568,384.8	—	568,384.8	13.0	—
	일반상업지역	568,384.8	—	568,384.8	13.0	—
공업 지역	소 계	73,561.2	—	73,561.2	1.7	—
	준공업지역	73,561.2	—	73,561.2	1.7	—
녹지 지역	소 계	557,629.1	—	557,629.1	12.8	—
	자연녹지지역	557,629.1	—	557,629.1	12.8	—

■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
위치	용도지역		면 적(㎡)	결정(변경)사유서
	기 정	변 경		
양천구 목동 904-1	제1종일반주거 지역	제3종일반주거 지역	6,517.0	• 목동4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
양천구 목동 904-2	제1종일반주거 지역	제3종일반주거 지역	1,713.7	• 목동4단지 내 녹지의 선형변경 후 공동주택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
양천구 목동 904	제3종일반주거 지역	제1종일반주거 지역	7,034.3	• 목동4단지 공원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
양천구 목동 904-2	제1종일반주거 지역	제3종일반주거 지역	9,602.7	•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녹지의 용도지역 변경
양천구 목동 904-2	제1종일반주거 지역	제3종일반주거 지역	408.5	• 목동중앙로, 목동서로 확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
나. 용도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다. 도시기반시설 결정(변경)조서

1) 교통시설

① 도로(변경)(안)

■ 도로 총괄표(기정)

구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
합계	106	57,048	964,451	19	6,072	179,611	41	25,882	268,410	46	25,094	516,430
광로	1	1,750	84,637	1	1,750	84,637	—	—	—	—	—	—
대로	36	38,470	572,640	1	1,823	61,137	5	14,332	65,154	31	24,138	507,486
중로	23	9,225	182,574	—	—	—	20	8,903	178,467	3	322	4,107
소로	45	5,780	63,463	17	2,499	33,837	16	2,647	24,789	12	634	4,837

※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

■ 도로 총괄표(변경)(안)

구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	노선수	연장(m)	면적(m ²)
합계	106	57,048	966,751	19	6,072	179,611	41	25,882	269,170	46	25,094	517,970
광로	1	1,750	84,637	1	1,750	84,637	—	—	—	—	—	—
대로	37	40,293	635,317	1	1,823	61,137	5	14,332	65,154	31	24,138	509,026
중로	23	9,225	183,334	—	—	—	20	8,903	179,227	3	322	4,107
소로	45	5,780	63,463	17	2,499	33,837	16	2,647	24,789	12	634	4,837

※ 상기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해당사항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 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광로	1	12	50	주간선	1,750	안양천교	목1동 407-20	일반 도로	-	서고시422 호 (94.12.27)	상주공급설 비와 중복결정
기정	대로	2	36	30	주간선	3,663	진명여고 사거리	서울시계	일반 도로	-	건고시 198 (71.04.07)	신월로
기정	대로	2	37	30	주간선	1,600	도림동	신길동	일반 도로	-	서고시422 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2	38	30	주간선	7,250	외발산동	고척동	일반 도로	-	건고시 198 (71.04.07)	철도와 중복결정
기정	대로	2	73	30	주간선	272	신정동 576-3	대 3-147	일반 도로	-	서고시422 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2	79	42	주간선	1,550	오목교	목동오거리	일반 도로	-	서고시422 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86	25~ 33.5	보조간선	6,950	양화동	광명시계	일반 도로	-	서고시422 호 (94.12.27)	제방과 중복결정
기정	대로	3	146	25	보조간선	2,170	경인 고속국도	강서구 목동 136-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 호 (94.12.27)	중앙로 (강서로)
변경	대로	3	146	28	보조간선	2,170	경인 고속국도	강서구 목동 136-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 호 (94.12.27)	중앙로 (강서로)
기정	대로	3	147	25	보조간선	1,527	대 2-79	신정동 80-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 호 (94.12.27)	하수도와 중복결정
기정	대로	3	148	25	보조간선	2,080	신정동 576-3	신정동 406-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 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49	25	보조간선	1,415	대 3-169	신정동 83-5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50	25	집산도로	383	대 3-169	대 3-148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51	25	보조간선	2,000	대 3-169	대 3-86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변경	대로	3	151	28	보조간선	2,000	대 3-169	대 3-86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52	25	보조간선	2,000	대 3-169	대 3-86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53	25	집산도로	150	대 3-151	대 3-15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54	25	보조간선	230	신정동 36-1	고척동 186-3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55	25	집산도로	150	대 3-151	대 3-15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56	25	집산도로	150	대 3-151	대 3-15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대로	3	157	25	집산도로	150	대 3-151	대 3-15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58	25	집산도로	150	대 3-151	대 3-15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59	25	집산도로	150	대 3-151	대 3-15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60	25	집산도로	150	대 3-151	대 3-15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61	25	집산도로	150	대 3-148	대 3-150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63	25	집산도로	150	대 3-147	신정동 868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64	25	집산도로	150	대 3-147	대 3-149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65	25	집산도로	150	대 3-147	대 3-149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66	25	집산도로	150	대 3-147	대 3-149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67	25	집산도로	150	대 3-147	대 3-149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68	25	집산도로	150	대 3-147	대 3-149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69	25	주간선	529	대 3-86 (구역계)	대 3-173 (대 3-173)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70	25	보조간선	30	대 3-149	목동중교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71	25	보조간선	880	구로구 고척동 41-1	강서구 신정동 171-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72	25	보조간선	323	대 3-148	대 3-15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173	25	주간선	150	대 3-150	대 3-148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하수도와 중복결정
기정	대로	3	174	25	보조간선	894	-	-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205	25	집산도로	150	대로3-147	대로3-149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대로	3	-	25	보조간선	330	대 3-152	목동 914-3	일반 도로	-	양천구공고 225호 (04.07.05)	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사잇길
기정	중로	2	263	15	집산도로	548	대 3-146	대 3-15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 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2	264	15	집산도로	255	대 3-146	대 3-15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2	265	15	집산도로	463	대 3-146	대 3-15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2	266	15	집산도로	498	대 3-146	대 3-15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변경	중로	2	266	18	집산도로	498	대 3-146	대 3-15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2	268	15	집산도로	534	대 2-36	대 3-147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2	269	15	집산도로	365	중 2-271	대 2-36 대 3-147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2	270	15	집산도로	516	중 2-271	대 2-73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2	271	15	보조간선	350	대 3-149	신정동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2	272	15	집산도로	443	대 2-73	중 2-276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2	273	15	집산도로	376	중 2-276	대 3-154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2	274	15	집산도로	341	대 3-149	차량기지 (신정동)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2	275	15	집산도로	341	대 3-149	차량기지 (신정동)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2	276	15	집산도로	1,092	대 2-38	대 2-37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철도와 중복결정
기정	중로	2	277	15	집산도로	582	대 2-37	신정동 331-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철도와 중복결정
기정	중로	2	278	15	집산도로	960	대 3-86	강저구 신정동 294-4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2	279	15	집산도로	150	광 1-12	대 3-15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2	280	15	집산도로	150	광 1-12	대 3-15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중로	3	281	15	집산도로	326	신정동 76-22	신정동 80-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282	15	집산도로	290	대 3-147	목동 408-115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261	12	집산도로	150	대 3-150	대 3-15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262	12	집산도로	150	대 3-150	대 3-15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3	338	12	집산도로	22	대 3-171	신정동 330-13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 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1	1	10	특수도로	240	목동 917-2	목동 918-2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2	10	특수도로	250	목동 917-2	목동 918-2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4	10	특수도로	170	목동 924-1	목동 924-2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5	10	특수도로	170	목동 923-1	목동 924-1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6	10	특수도로	230	신정동 319-4	신정동 318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7	10	특수도로	230	신정동 320-3	신정동 319-4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8	10	국지도로	160	신정동 322-3	신정동 321-3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9	7	국지도로	7	신정동 312-3	신정동 1126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녹지와 중복결정
기정	소로	1	10	10	국지도로	64	대 3-147	신정동 134-3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11	10	국지도로	40	대 3-147	신정동 318	일반도 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12	10	특수도로	150	대 3-151	대 3-152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13	10	특수도로	70	목동 908-38	목동 908-35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14	10	특수도로	85	목동 908-35	대 3-157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15	10	특수도로	95	광 1-12	대 3-159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16	10	특수도로	170	대 3-168	대 2-73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17	11	특수도로	184	대로 3-173	대로 2-79 (오목로)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1	18	10~27	특수도로	184	대로 2-79 (오목로)	목동 408-178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2	8	특수도로	300	목동 900-8	목동 909-1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3	8	특수도로	300	신정동 324-3	신정동 323-1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 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2	5	8	특수도로	380	목동 908-1	목동 907-1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6	8	특수도로	260	신정동 323-1	신정동 322-3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9	8	국지도로	106	대 3-163	신정 318-10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10	8	국지도로	210	대 3-147	대 3-164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11	8	국지도로	104	대 3-147	대 3-163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12	8	국지도로	116	대 3-147	대 3-147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13	8	국지도로	92	대 3-149	대 3-167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14	8	국지도로	92	대 3-147	대 3-168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15	8	국지도로	180	대 3-152	대 3-155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16	8	국지도로	90	대 3-151	대 3-156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17	8	국지도로	20	대 3-152	목동 905-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18	8	국지도로	90	대 3-167	대 3-147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19	8	국지도로	90	대 3-168	대 3-149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2	20	8	국지도로	217	대 3-146 목동 산 29-3	목동 231-217	일반 도로	-	서고시 152 (82.04.03)	녹지와 중복결정
기정	소로	3	1	6	국지도로	85	신정동 296-7	신정동 296-5	일반 도로	-	서고시 152 (82.04.03)	-
기정	소로	3	4	4	국지도로	5	신정동 312-3 (중 2-271)	신정동 1050-16	일반 도로	-	서고시 152 (82.04.03)	녹지와 중복결정
기정	소로	3	5	4	국지도로	9	신정동 312-3 (중 2-271)	신정동 1050-15	일반 도로	-	서고시 152 (82.04.03)	녹지와 중복결정
기정	소로	3	8	6	국지도로	10	신정동 312-3 (중 2-271)	신정동 1123	일반 도로	-	서고시 152 (82.04.03)	녹지와 중복결정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 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3	10	6	국지도로	10	신정동 312-3 (중 2-271)	신정동 1123	일반 도로	-	서고시 152 (82.04.03)	녹지와 중복결정
기정	소로	3	15	6~10	국지도로	130	대 3-151	대 3-15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3	16	6~8	국지도로	120	대 3-152	대 3-152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3	17	6	특수도로	50	대 3-152	소 1-1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3	18	6	국지도로	136	대 3-151	대 3-151	일반 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3	25	6	특수도로	25	목동 905-1	목동 905-34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3	26	6	특수도로	32	대 3-151	소로 3-18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소로	3	27	6	특수도로	22	소로 3-18	소로1-1	보행자 전용도로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
■ 도로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 3-146	대로 3-146	· 폭원변경 - 25m → 28m	· ‘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’ 반영에 따른 목동중앙로 3m확폭
대로 3-151	대로 3-151	· 폭원변경 - 25m → 28m	· ‘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’ 반영에 따른 목동서로 일방통행도로 3m확폭
중로 2-266	중로 2-266	· 폭원변경 - 15m → 18m	· ‘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’ 반영에 따른 목동서로8길 3m확폭 (구역내 1.5m)

② 주차장(변경)(안)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(안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기정	①	노외주차장	목동 915	100,824.3	-	100,824.3	서고시 422호 (94.12.27)	목동유수지와 중복결정
기정	②	노외주차장	목동 907-8	1,188.4	-	1,188.4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③	노외주차장	목동 907-19	1,124.2	-	1,124.2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④	노외주차장	목동 905-29	684.7	-	684.7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⑤	노외주차장	신정동 318-2	852.0	-	852.0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⑥	노외주차장	신정동 322-5	1,139.0	-	1,139.0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⑦	노외주차장	신정동 323-18	607.0	-	607.0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⑧	노외주차장	신정동 323-13	608.2	-	608.2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⑨	노외주차장	목동 905-21	892.8	-	892.8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⑩	노외주차장	신정동 323-25	726.5	-	726.5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⑪	노외주차장	신정동 322-12	749.2	-	749.2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⑫	노외주차장	신정동 319-21,22	1,157.4	-	1,157.4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⑬	노외주차장	신정동 319-21,22	1,513.2	-	1,513.2	2006.04.20	-
신설	A	주차장	목동 904	-	증) 3,850.0	3,850.0	-	소공원A와 중복결정 -지상:공원 -지하:주차장

※ 주차전용건축물 건축기준

- 층수 : 7층 이하

-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 :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, 업무시설, 운동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

- 부대시설 비율 : 30% 이내

■ 주차장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A	주차장	신 설 증) 3,850.0㎡	· 주변 주택가의 주차수요 충족 · 향후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차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 중복결정

② 철도: 변경없음

2) 공간시설

① 공원(변경)(안)

■ 공원 총괄표(기정)

구분	개소	면적(m ²)
합계	24	173,346.2
근린공원	4	84,494.4
문화공원	1	29,619.3
어린이공원	19	59,232.5

■ 공원 총괄표(변경)(안)

구분	개소	면적(m ²)
합계	24	176,872.2
근린공원	4	84,494.4
문화공원	1	29,619.3
어린이공원	18	52,715.5
소공원	1	10,043.0

■ 공원 결정(변경)(안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		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기정	①	제1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목동 901-2	2,299.5	-	2,299.5	서고시422호 (94.12.27)	1단지
기정	②	제2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목동 902-2	4,211.4	-	4,211.4	서고시422호 (94.12.27)	2단지
기정	③	제3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목동 903-2	2,985.4	-	2,985.4	서고시422호 (94.12.27)	3단지
폐지	④	제4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목동 904-1	6,517.0	감) 6,517.0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4단지
기정	⑤	제5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목동 911-5	3,659.2	-	3,659.2	서고시422호 (94.12.27)	6단지
기정	⑥	제6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목동 912-1	3,963.8	-	3,963.8	서고시422호 (94.12.27)	5단지
기정	⑦	제7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목동 913-1	3,815.8	-	3,815.8	서고시422호 (94.12.27)	5단지
기정	⑧	제8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목동 925-1	2,375.1	-	2,375.1	서고시422호 (94.12.27)	7단지
기정	⑨	제9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신정동 314-1	3,730.1	-	3,730.1	서고시422호 (94.12.27)	8단지
기정	⑩	제10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신정동 313-2	1,738.6	-	1,738.6	서고시422호 (94.12.27)	9단지
기정	⑪	제11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신정동 312-2	3,500.0	-	3,500.0	서고시422호 (94.12.27)	9단지
기정	⑫	제12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신정동 311-1	3,148.2	-	3,148.2	서고시422호 (94.12.27)	10단지
기정	⑬	제13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신정동 325-2	2,498.5	-	2,498.5	서고시422호 (94.12.27)	11단지
기정	⑭	제14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신정동 326-2	3,399.7	-	3,399.7	서고시422호 (94.12.27)	12단지
기정	⑮	제15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신정동 327-1	2,265.5	-	2,265.5	서고시422호 (94.12.27)	13단지
기정	⑯	제16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신정동 328-1	2,149.8	-	2,149.8	서고시422호 (94.12.27)	13단지
기정	⑰	제17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신정동 329-2	2,433.9	-	2,433.9	서고시422호 (94.12.27)	14단지
기정	⑱	제18어린이공원	어린이공원	신정동 332-1	2,511.3	-	2,511.3	서고시422호 (94.12.27)	14단지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기정	⑬	제19어린이 공원	어린이공 원	신정동 330-1	2,029.7	-	2,029.7	서고시422호 (94.12.27)	14단지
기정	근-①	신트리공원	근린공원	신정동 310-7	16,409.3	-	16,409.3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근-②	목마공원	근린공원	목동 910	12,816.8	-	12,816.8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근-③	오목공원	근린공원	목동 921	21,470.4	-	21,470.4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근-④	양천공원	근린공원	신정동 320	33,797.9	-	33,797.9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기정	문-①	파리공원	문화공원	목동 906	29,619.3	-	29,619.3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신설	A	공원	소공원	목동 904	-	증) 10,043.0	10,043.0	-	4단지, 주차장A와중복결정 - 지상:공원 - 지하:주차장

■ 공원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④	제4어린이공 원	폐 지 감) 6,517.0㎡	· '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'에 따른 공원 폐지
A	공원	신 설 증) 10,043.0㎡	· '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'에 따른 공원 신설 · 지하주차장과 중복결정

② 녹지(변경)(안)

■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기정	①	3단지 서측녹지	경관녹 지	목동 903-7,8 10~17	1,280.0	-	1,280.0	서고시 422호 (94.12.27)	도로와 중복결 정
변경	②	4단지 연변녹지	경관녹 지	목동 904-2	14,793. 8	감) 3,315.1	11,478.7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정	③	4단지 서측녹지	경관녹 지	목동 904-5,6, 7 20~24	1,970.4	-	1,970.4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정	④	6단지 연변녹지	경관녹 지	목동 911-8	4,130.9	-	4,130.9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정	⑤	5단지 연변녹지	경관녹 지	목동 913-2	11,735. 9	-	11,735. 9	서고시 422호 (94.12.27)	도로로 인한 녹지 분할
기정	⑥	목동교 서측IC녹 지	완충녹 지	목동 914-1	6,498.7	-	6,498.7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기 정	⑦	목동교 서측IC녹 지	완충녹지	목동 911-7	7,207.9	-	7,207.9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⑧	916-1 도 남측녹지	경관녹지	목동 916-2	1,891.6	-	1,891.6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⑨	7단지 연변녹지	경관녹지	목동 925-8	8,854.0	-	8,854.0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⑩	목동 927번 녹지	경관녹지	목동 927-2	862.5	-	862.5	서고시 422호 (94.12.27)	7단지
기 정	⑪	927-9 구 서측녹지	경관녹지	목동 927-10	787.4	-	787.4	서고시 422호 (94.12.27)	7단지 서측
기 정	⑫	진명여고 변 녹지	경관녹지	목동 927- 11,12,13, 14	6,622.8	-	6,622.8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⑬	8단지 연변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14-2,3	12,760. 9	-	12,760. 9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⑭	9단지 연변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13-3	6,217.1	-	6,217.1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⑮	9,10단지 북측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12- 4,6,7,8,9, 10,11,12, 13,14,15, 16,17 313-5,7	2,726.5	-	2,726.5	서고시 422호 (94.12.27)	도로와 중복 결정
기 정	⑯	10단지 연변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11-2	2,270.6	-	2,270.6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⑰	양명초등 북측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10-5	803.0	-	803.0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⑱	11단지 연변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25-4	10,815. 9	-	10,815. 9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㉑	11단지 연변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25-9	7,896.9	-	7,896.9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㉒	11단지 남측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25- 13,14	3,031.9	-	3,031.9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㉓	12단지 연변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26-1	2,347.9	-	2,347.9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㉔	13단지 연변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28-2	6,013.1	-	6,013.1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㉕	14단지 연변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29-1	6,833.6	-	6,833.6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㉖	14단지 연변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30-6	3,867.5	-	3,867.5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㉗	목동중학교 서측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19-10	102.4	-	102.4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㉘	하수도변 연변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30- 16,23	411.5	-	411.5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 정	㉙	하수도변 연변녹지	경관녹지	신정동 330-17	341.9	-	341.9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
■ 녹지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②	4단지 연변녹지	· 녹지 선형 및 면적변경 - 감) 3,315.1㎡	· 지정 녹지의 기능을 유지하고,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과 연계될수 있도록 선형 변경

3) 유통 및 공급시설

① 수도공급설비 : 변경없음

② 공동구 : 변경없음

③ 전기공급설비 : 변경없음

④ 방송·통신시설 : 변경없음

4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① 운동장 : 변경없음

② 체육시설

■ 체육시설 결정(변경)(안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기정	①	체육시 설	목동 914-5	20,783.3	-	20,783.3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기정	②	체육시 설	신정동 322-10	6,877.1	-	6,877.1	서고시 422호 (94.12.27)	-
신설	A	체육시 설	목동 904	-	증) 2,957.3	2,957.3	-	-

■ 체육시설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②	체육시설	변 경 증) 2,957.3㎡	· 수요조사를 통한 체육시설 신설

■ 건축범위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건폐율	용적률	최고높이	비고
신설	A	50% 이하	250%이하	-	제3종일반주거지 역

- ③ 공공청사 : 변경없음
- ④ 문화시설 : 변경없음
- ⑤ 학교 : 변경없음
- ⑥ 사회복지시설 : 변경없음
- 5) 방재시설 : 변경없음
- 6) 보건위생시설 : 변경없음
- 7) 환경기초시설 : 변경없음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조서

1) 가구계획 : 변경없음

2) 획지계획

① 주거지역(공동주택용지) 및 기타지역

■ 획지 결정(변경)(안)조서

구분	획지번호	가구번호	지번	면적(m ²)	계획내용	비고
기정	A1-①	A1	목동 900-4	3,302.8	-	-
기정	A1-②	A1	목동 900-2	657.0	-	공공청사
기정	A1-③	A1	목동 900-12	8,313.0	-	공공청사
기정	A1-④	A1	목동 900-11	4,327.2	-	공공청사
기정	A1-⑤	A1	목동 900	77,258.5	-	전기공급 설비
기정	-	A1	목동 900-16	455.9	자율적공동개발	-
기정	-	A1	목동 900-17	1,169.5	자율적공동개발	-
기정	A2-①	A2	목동 901	163,197.4	특별계획구역1	1단지
기정	A3-①	A3	목동 902	155,041.1	특별계획구역2	2단지
기정	A4-①	A4	목동 903	146,538.1	특별계획구역3	3단지
기정	A5-①	A5	목동 904	101,514.5	특별계획구역4	4단지
변경	A5-①	A5	목동 904	96,046.4	특별계획구역4	4단지

구분	획지번호	가구번호	지번	면적(㎡)	계획내용	비고
기정	A6-①	A6	목동 913	70,485.4	특별계획구역5	5단지
기정	A7-①	A7	목동 912	108,854.4	특별계획구역5	5단지
기정	A8-①	A8	목동 911	94,634.5	특별계획구역6	6단지
기정	A11-①	A11	목동 925, 925-3	119,955.9	특별계획구역7	7단지
기정	A12-①	A12	목동 926, 926-2	38,208.7	특별계획구역7	7단지
기정	A13-①	A13	목동 927	21,985.3	특별계획구역7	7단지
기정	A13-②	A13	목동 927-3	800.3	-	종교시설
기정	A13-③	A13	목동 927-4	661.2	-	종교시설
기정	A14-①	A14	신정동 314, 314-5	72,108.0	특별계획구역8	8단지
기정	A14-②	A14	신정동 314-4	661.9	-	종교시설
기정	A15-①	A15	신정동 313	67,895.8	특별계획구역9	9단지
기정	A16-①	A16	신정동 312	99,278.3	특별계획구역9	9단지
기정	A17-①	A17	신정동 311	141,874.9	특별계획구역10	10단지
기정	A18-①	A18	신정동 310, 310-2	34,051.4	특별계획구역10	10단지
기정	A19-①	A19	신정동 325	64,555.7	특별계획구역11	11단지
기정	A20-①	A20	신정동 325-1	39,491.2	특별계획구역11	11단지
기정	A21-①	A21	신정동 326	121,591.9	특별계획구역12	12단지
기정	A22-①	A22	신정동 327	111,874.6	특별계획구역13	13단지
기정	A23-①	A23	신정동 50,265.1	50,265.1	특별계획구역13	13단지
기정	A24-①	A24	신정동 329-8	1,320.0	-	종교시설
기정	A24-②	A24	신정동 329-10	1,238.3	-	근생시설
기정	A24-③	A24	신정동 329-12	660.0	-	종교시설
기정	A25-①	A25	신정동 329	68,960.9	특별계획구역14	14단지
기정	A26-①	A26	신정동 332	34,004.1	특별계획구역14	14단지
기정	A26-②	A26	신정동 331	52,143.7	특별계획구역14	14단지
기정	-	A26	신정동 332-4	310.0	자율적공동개발	-
기정	-	A26	신정동 332-5	313.3	자율적공동개발	-
기정	-	A26	신정동 332-6	318.6	자율적공동개발	-
기정	-	A26	신정동 332-7	308.6	자율적공동개발	-
기정	A27-①	A27	신정동 330	61,448.7	특별계획구역14	14단지

② 중심지역(목동중심지구) : 변경없음

3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4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4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
가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나.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(변경)

1) 주거지역(공동주택용지) 및 기타지역

■ 특별계획구역4 - 목동4단지

구 분	계 획 지 침		비 고
	기 정	변 경	
위 치	· 양천구 목동 904일대	좌동	—
특별계획구역 면적	· 122,825.3㎡	좌동	—
획지면적	· 96,046.4㎡(78.2%)	좌동	
기반시설면적	· 26,778.9㎡(21.8%) - 사회복지시설 2,957.3㎡(2.4%) - 소공원 8,577.6㎡(7.0%) - 녹지 12,944.1㎡(10.5%) - 도로 2,299.9㎡(1.9%)	· 26,778.9㎡(21.8%) - 체육시설 2,957.3㎡(2.4%) - 소공원 10,043.0㎡(8.2%) (지하 주차장 3,850㎡중복) - 녹지 11,478.7㎡(9.3%) - 도로 2,299.9㎡(1.9%)	—
용도지역	· 제3종일반주거지역(획지) ※ 기반시설의 경우, 기존 용도지역 유지	· 획지 : 제3종일반주거지역 · 체육시설, 경관녹지, 도로 : 제3종일반주거지역 · 소공원 : 제1종일반주거지역 ※ 경관녹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→ 제3종일반주거지역, 그 외 기반시설 기존 용도지역 유지	—
기반시설 설치	· 도로 폭원확장 : - 목동서로: 28m (구역내 3m확폭) - 목동중앙로: 28m (구역내 3m확폭) - 목동서로8길: 18m (구역내 획지1 1.5m확폭) · 소공원 신설, 녹지(폭원 20m) 일부 변경 · 사회복지시설 신설	· 도로 폭원확장 : - 목동서로: 28m (구역내 3m확폭) - 목동중앙로: 28m (구역내 3m확폭) - 목동서로8길: 18m (구역내 1.5m확폭) · 소공원 신설(공원하부 주차장 중복결정), 녹지 선형 변경, 체육시설 신설	지침도에 따름

구 분			계 획 지 침		비 고
			기 정	변 경	
건축물 의 용도· 밀도	용도	불허 용도 A	·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 규정준용 ·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정비계획(세부개발계획) 수립시 결정	좌동	-
		지정 용도 a	[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1~2층] · 제1종근린생활시설·제2종근린생활시설(충포판매소, 장의사, 다중생활시설,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) ·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중 노유자시설, 작은도서관(독서실), 지식산업센터, 사회복지관, 공동작업장, 주민공동시설	좌동	[전층] · 공동주택 · 부대복리시설
	건폐율		· 50% 이하	좌동	-
	용적률		· 기준/허용/상한 용적률 : 210%이하/230%이하/250%이하	좌동	-
	높 이		· 최고높이 : 35층 이하 ※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· 저층배치구간 (공공보행통로변 폭 5m / 목동중앙로변 폭 6m / 목동서로변 폭 16m) - 아파트 : 7층 이하 - 커뮤니티활성화용도 : 2층 이하 · 중저층배치구간(목동서로변 폭 40m / 목동중앙로변 폭 26m) - 15층 이하 - 목동중앙로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	· 최고높이 : 49층 이하 ※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3차원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 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· 저층배치구간 (공공보행통로변 폭 5m / 목동중앙로변 폭 6m) - 아파트 : 7층 이하 - 커뮤니티활성화용도 : 2층 이하 · 중저층배치구간(목동서로변 공개공지 후퇴부 폭 40m / 목동중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 폭 26m) - 15층 이하 - 목동중앙로에 연결하여 건축하는 아파트의 첫 주동은 7층 이하	-
	배 치		· 목동서로(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) : 획지선으로부터 4m · 목동중앙로변(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) : 획지선으로부터 4m	· 목동중앙로변(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) : 획지선으로부터 4m	-
배 치	저층부 건축지정선 (2층이하)		· 목동서로(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) : 획지선으로부터 4m	· 목동중앙로변(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) : 획지선으로부터 4m	-
	건축한계선		· 공동주택부지 - 국회대로변 : 획지선으로부터 10m - 목동서로, 목동중앙로변(3층 이상 공동주택) : 획지선으로부터 8m - 목동서로8길, 소공원변 : 획지선으로부터 6m · 사회복지시설부지 - 국회대로변 : 획지선으로부터 6m - 목동중앙로변 : 획지선으로부터 4m	· 공동주택부지 - 국회대로변 : 획지선으로부터 5m - 목동중앙로변(3층 이상 공동주택) : 획지선으로부터 8m - 목동서로8길, 소공원변 : 획지선으로부터 6m · 체육시설부지 - 목동중앙로변 : 획지선으로부터 4m	-
	부대 복리시설 건축한계선		· 국회대로변 : 획지선으로부터 6m	· 국회대로변 : 획지선으로부터 5m	-
	고층부 벽면한계선		· 국회대로변 : 획지선으로부터 13m	-	-

구 분		계 획 지 침		비 고
		기 정	변 경	
대지내 공지	전면공지	• 공동주택부지 - 국회대로변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후퇴부(6m) - 목동서로, 목동중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(4m) - 목동서로 8길, 소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(6m)	• 공동주택부지 - 국회대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(5m) - 목동서로변 획지선 후퇴부(4m) - 목동중앙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(4m) - 목동서로 8길, 소공원변 건축한계선 후퇴부(6m)	-
		• 사회복지시설부지 - 국회대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(6m) - 목동중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(4m)	• 체육시설부지 - 목동중앙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(4m)	-
	공공 보행통로	•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: 폭15m ※ 공공보행통로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연속된 가로수 식재 (도로(기반시설)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연속되도록 설치함) ※ 공공보행통로는 녹지생태도심 개념을 반영하여 조성하도록 함	좌동	-
교통 처리	차량출입 불허구간	• 국회대로, 목동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•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내에서는 대지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※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차량출입구간 적용	좌동	-
	단지내 주차 및 차량동선	• 비상차량과 별도 용도의 차량을 제외한 단지내 지상주차를 금지 • 단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지양하고 가급적 보도와 같은 형태의 재료 및 형태로 조성 •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• 커뮤니티활성화시설을 이용하는(서비스 포함) 차량을 위한 별도의 동선 및 지상주차 확보	좌동	-
	단지내 보행동선	• 커뮤니티활성화시설 등 보행다발 시설과 연계되는 곳에 단지 내 보행동선을 조성 • 보행동선은 인접단지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조성 • 보행축 상에 조정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설치 • 목동서로변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 후면부 보행환경개선 및 커뮤니티시설 활용을 위한 보행동선 설치(권장)	좌동	-
배치 구간 설정	커뮤니티 활성화 용도 배치구간	• 목동서로변 • 목동중앙로변 • 국회대로변 •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•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(권장)	• 목동중앙로변 • 국회대로변 •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변 • 건축지정선으로부터 유효너비 2m이상의 연속된 아케이드 조성(권장)	-

구 분		계 획 지 침		비 고
		기 정	변 경	
기타 사항	경관	· 세부개발계획 수립시,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“가로경관특화방안”을 수립	좌동	—
	주택의 규모	· 세부개발계획 수립시, 1~2인 가구 및 노령가구 등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위한 “소형주택공급계획” 수립 주변특성과 세대별 행태(생활패턴, 라이프스타일 등)를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특성화합 청년주택 등 활동적인 세대들은 역세권 주변 등 교통편의성이 높은 장소에 우선 배치 노인 주택 등 주거정주성이 중요한 세대들은 대중교통 중심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고, 공원 주변 등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에 우선 배치	좌동	—
	자전거 도로	· 자전거전용도로 : 목동서로, 목동중앙로, 국회대로, 목동서로8길변 (폭 1.5m 이상, 부득이한 경우 1.2m 가능)	좌동	—

- ※ 1) 층수 및 상한용적률은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에 의한 지구단위계획(세부개발계획) 수립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’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
- 2) 기반시설(체육시설 등) 부지의 용도·밀도는 해당시설의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
- 3)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,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될 경우 공원·녹지면적을 1세대당 3㎡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% 이상 중 큰 면적 확보
- 4) 기타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 참조
- 5) 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커뮤니티활성화용도의 설치 위치,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토록 함

- 이하여백 -

V.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
- 정비사업의 명칭 :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-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고
신규	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	양천구 목동 904번지 일대	122,825.3	

3. 정비계획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증 감	변 경		
합 계	122,825.3	-	122,825.3	100.0	-
제1종일반주거지역	21,250.6	감) 11,207.6	10,043.0	8.2	-
제3종일반주거지역	101,574.7	증) 11,207.6	112,782.3	91.8	-

■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
위 치	용도지역		면 적(㎡)	결정(변경)사유서
	기 정	변 경		
양천구 목동 904-1	제1종일반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6,517.0	· 목동4단지 내 어린이공원 폐지 후 공동주택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
양천구 목동 904-2	제1종일반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1,713.7	· 목동4단지 내 녹지의 선형변경 후 공동주택계획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
양천구 목동 904	제3종일반주거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7,034.3	· 목동4단지 공원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
양천구 목동 904-2	제1종일반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9,602.7	·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녹지의 용도지역 변경
양천구 목동 904-2	제1종일반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408.5	· 목동중앙로, 목동서로 확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
나. 용도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다. 토지이용계획(안)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합 계		122,825.3	－	122,825.3	100.0	－
획 지	주 택 용 지	101,514.5	감) 5,468.1	96,046.4	78.2	－
정 비 기 반 시 설 등	소 계	21,310.8	증) 5,468.1	26,778.9	21.8	－
	도 로	－	증) 2,299.9	2,299.9	1.9	－
	공 원	6,517.0	증) 3,526.0	10,043.0	8.2	소공원, 주차장과 중복결정
	(주차장)	(－)	(증) 3,850.0)	(3,850.0)	0.0	(소공원과 중복결정)
	녹 지	14,793.8	감) 3,315.1	11,478.7	9.3	경관녹지
	체 육 시 설	－	증) 2,957.3	2,957.3	2.4	－

라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(안)조서

1) 교통시설

① 도로(변경)(안)조서

구 분	규 모				기 능	연장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기정	대로	3	146	25	보조간선	2,170	신정동 576-3	대 3-147	일반도로	서고시422호 (94.12.27)	중앙로 (강서로)
변경	대로	3	146	28	보조간선	2,170	신정동 576-3	대 3-147	일반도로	서고시422호 (94.12.27)	중앙로 (강서로)
기정	대로	3	151	25	보조간선	2,000	대 3-169	대 3-86	일반도로	서고시422호 (94.12.27)	목동서로
변경	대로	3	151	28	보조간선	2,000	대 3-169	대 3-86	일반도로	서고시422호 (94.12.27)	목동서로
기정	중로	2	266	15	집산도로	498	대 3-146	대 3-151	일반도로	서고시422호 (94.12.27)	목동서로 8길
변경	중로	2	266	18	집산도로	498	대 3-146	대 3-151	일반도로	서고시422호 (94.12.27)	목동서로 8길

■ 도로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 3-146	대로 3-146	• 폭원변경 - 25m → 28m	• ‘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’ 반영에 따른 목동중앙로 3m확폭
대로 3-151	대로 3-151	• 폭원변경 - 25m → 28m	• ‘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’ 반영에 따른 목동서로 일방통행도로 3m확폭
중로 2-266	중로 2-266	• 폭원변경 - 15m → 18m	• ‘서울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’ 반영에 따른 목동서로8길 3m확폭 (구역내 1.5m)

② 주차장(변경)(안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신설	A	주차장	목동 904	-	증) 3,850.0	3,850.0	-	소공원A와 중복결정 - 지상:공원 - 지하:주차장

■ 주차장 변경사유서

도면표 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A	주차장	신 설 증) 3,850.0㎡	• 주변 주택가의 주차수요 충족 • 향후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차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 중복결정

2) 공간시설

① 공원(변경)(안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폐지	④	제4어린이공원	어린이공 원	목동 904-1	6,517.0	감) 6,517.0	-	서고시422호 (94.12.27)	-
신설	A	공원	소공원	목동 904	-	증) 10,043.0	10,043.0	-	주차장A와 중복결정 - 지상:공원 - 지하:주차장

■ 공원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④	제4어린이공원	폐 지 감) 6,517.0㎡	· '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'에 따른 공원 폐지
A	공원	신 설 증) 10,043.0㎡	· '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'에 따른 공원 신설 · 지하주차장과 중복결정

② 녹지(변경)(안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변경	②	4단지 연변녹지	경관녹지	목동 904-2	14,793.8	감) 3,315.1	11,478.7	서고시442호 (94.12.27)	-

■ 녹지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②	4단지 연변녹지	· 녹지 선형 및 면적변경 - 감) 3,315.1㎡	· 기정 녹지의 기능을 유지하고,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선형 변경

3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① 체육시설 결정(변경)(안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신설	A	체육시설	목동 904	-	증) 2,957.3	2,957.3	-	-

■ 체육시설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A	체육시설	신 설 감) 2,957.3㎡	· 수요조사를 통한 체육시설 신설

■ 건축범위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건폐율	용적률	높이	비고
신설	A	50% 이하	250% 이하	-	제3종일반주거지역

마.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
구 분	구 역 구 분		위 치	정 비 개 량 계 획 (동)					비 고
	명 칭	면 적 (㎡)		계	존 치	개 수	철거후 신 축	철 거 이 주	
신설	목동4단지 재건축정비구 역	122,825.3	서울시 양천구 목동 904일대	21	-	-	21	-	-

사.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된 용도	건폐 율 (%)	용적률(%)				높이 (층수)
	명 칭	면 적(㎡)	명 칭	면적 (㎡)				기준	허용	상한	예정 법적 상한	
신설	목동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	122,825.3	A5-①	96,046.4	목동 904 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50 이하	210.00 이하	230.00 이하	250.00 이하	299.76 이하	179m (49층) 이하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- 주택공급계획 : 2,384세대 - 전체건립규모 (전용면적기준) ※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(도시정비법 제54조)									
			건립규모		세대수(임대세대)		비율(%)					
			합 계		2,384(257)		100.0					
			85㎡이하	60㎡이하		522(152)		21.9				
				60㎡초과~85㎡이하		1,100(105)		46.2				
			85㎡초과		762(-)		31.9					
- 85㎡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: 60% 이상 -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: 초과용적률의 50% 공급												
심의완화 사항			-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4조) - 상한용적률 250.00% → 예정법적상한용적률 : 299.76%	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건축선 지정									
			구분		위치		건축선 지정내용		비고			
			건축지정선 (2층이하)		목동중앙로변		획지선으로부터 4m		(커뮤니티활성화용도 배치구간)			
			건축 한계 선	공동주택 부지	국회대로변		획지선으로부터 5m		-			
					목동중앙로변		획지선으로부터 8m		(3층 이상 공동주택)			
					목동서로8길, 소공원변		획지선으로부터 6m		-			
체육시설 부지		목동중앙로변		획지선으로부터 4m		-						

- 용적률 계획

① 용적률 인센티브

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

구 분	내 용	
공공보행통로 (보차혼용통로)	-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(지역권* 설정) - 기준 : 기준용적률×(조성면적/대지면적)×a ※a=1이하 * 지역권 :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(등기로 설정)	10%p 이내
열린단지	- 단지 외곽개방, 담장미설치,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로 조성 (지형도면 고시) - 기준 : 개방공간,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(위원회에서 인정시) *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 (준공 후에도 유지)	5%p
공개공지	-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·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- 기준: 기준용적률×[조성면적(의무면적제외)/대지면적]×a ※a=1이하 -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시 /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	5%p 이내
돌봄시설	- 지역에 필요한 놀이·돌봄시설* 설치 및 제공 (무상임대) - 기준 :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(의무면적)의 1/5이상 설치 * 국공립어린이집, 서울형키즈카페, 키움센터, 공동육아나눔터, 실내어린이놀이터 등	5%p
방재안전	- 화재·소방·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- 기준: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	5%p
기반시설 등 정비	-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(도로, 공원, 통학로 등/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) - 기준 : 기준용적률×(환산부지면적/대지면적)×a ※a=1이하 * 환산부지면적 : 정비비용/사업지 대지가액 (市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)	5%p 이내
지역특화	-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,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- 기준 :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(위원회에서 인정시)	10%p 이내 (합산)
합 계	최대 20%p 이내	

※ 23.03.23 「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·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」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사항 반영

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

구 분	내 용	인센티브량
공공보행통로	기준 주변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 등 조성(지역권 설정) - 기준용적률 × (조성면적 / 대지면적) × a ※ a=1 이하	5.6%p
	산정식 - $210.0\% \times (2,548.8 / 96,046.4) \times 1 = 5.6\%$ ※ a=1 적용	
공개공지	기준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·광장형태 등으로 설치 - 기준용적률 × [조성면적(의무면적제외) / 대지면적] × a ※ a=1 이하	4.4%p
	산정식 -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시 /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- $210.0\% \times (2,030.5 / 96,046.4) \times 1 = 4.4\%$ ※ a=1 적용	
열린단지	기준 단지 외곽 개방, 담장 미설치,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 - 개방공간,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(위원회 인정시) -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 도면에 표시(준공 후에도 유지)	5.0%p
방재안전	기준 화재·소방·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-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·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·자문을 통해 적용	5.0%p
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합계		20.0%p

■ 법적상한용적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% 이상을 공공주택(법적상한용적률 완화)으로 건설하여야 한다.

② 상한용적률 산정

구 분	산 정 내 용					
토지 이용 계획	구역면적	대지면적	계 획 정비기반시설		신설 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	대지(획지)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국·공유지
			토지	건축물 (토지 환산부지)		
	122,825.3㎡	96,046.4 ㎡	26,778.9㎡	1,789.4	13,097.0㎡	8,213.8㎡
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● 순부담면적 =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- 신설 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- 대지내 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 국·공유지 면적 = (26,778.9㎡+1,789.4㎡) - 13,097.0㎡ - 8,213.8㎡ = 7,257.5㎡ ● 순부담률 = 순부담면적 ÷ (사업면적 - 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 - 대지내 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 국·공유지 면적) = 7,257.5㎡÷ (122,825.3㎡ - 13,097.0㎡ - 8,213.8㎡) = 7.15%					
	토지 기부채납	● 토지 기부채납면적 =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토지면적 - 신설 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-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·공유지 면적 = 26,778.9㎡ 13,097.0㎡ - 8,213.8㎡ = 5,468.1㎡				
	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	● 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= (체육시설 총 공사비(연면적 × 공사비(㎡/원) / 부지가액) + (지하공영주차장 총공사비 (연면적 × 공사비(㎡/원) / 부지가액) = ((4,250.0㎡ × 3,883,636원)/14,599,261원) + ((3,850.0 × 2,498,182원)/14,599,261원) = 1,130.6㎡ + 658.8㎡ = 1,789.4㎡				
	건축물 공사비	● 「20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」 체육시설, 공영주차장 공사비 준용 = 체육시설 연면적 3,500㎡ ~ 5,000㎡ 공사비(4,272,000원) 부가세 제외 → ㎡ 당 3,883,636원 적용 = 공영주차장 연면적 3,000㎡ ~ 5,000㎡ 이상 공사비(2,748,000원) 부가세 제외 → ㎡ 당 2,498,182원 적용				
	건축물 부지가액	● 2023년 표준공시지가 적용 ● 획지 3개 지번에 대한 면적 가중평균 적용 후 평균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준용 ● 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」 부지의 가액 산정 기준 준용 = 산정 공시지가 × 2 = 7,299,630원 × 2 = 14,599,261원 적용				
기준 용적률	● 210.0%					
허용 용적률	● 230.0%					
상한 용적률 산정	● 허용용적률×(1+1.3×가중치×α+ 0.7×β) = 230%×(1+1.3×1×0.0569+0.7×0.0186)= 250.0% ※ α = 공공시설등부지(토지)로 제공한 후의 획지면적 대 공공시설등부지(토지)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= (기반시설 토지면적 - 기존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면적) / 획지면적 = (26,778.9㎡ - 21,310.8㎡) / 96,046.4㎡ = 5,468.1㎡ / 96,046.4㎡ = 0.0569 - β = 공공시설등부지(토지)로 제공한 후의 획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(현금 및 건축물설치비용 환산부지)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= (건축물 환산부지면적) / 획지면적 = 1,789.4㎡ / 96,046.4㎡ = 0.0186 - 가중치 = 공공시설 용적률(가중평균) / 사업부지 용적률 (가중평균) = 230% / 230% = 1					
법적상한 용적률	● 300.0%					

아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

시설구분	시설의 종류	법 정 기 준	법정면적(㎡)	계획면적(㎡)	비고
계		—	—	25,650㎡	
주민 공동 시설	계	$(500\text{㎡} + 2,384\text{세대} \times 2\text{㎡}) \times 1.25$	6,585.0㎡	25,650㎡	
	경로당	$500\text{㎡} + (2,384\text{세대} \times 0.2\text{㎡})$	976.8㎡	1,100㎡	
	시니어카페	—	—	500.0㎡	지역활성화시설
	어린이집	$500\text{㎡} + (2,384\text{세대} \times 0.2\text{㎡})$	976.8㎡	1,100㎡	공공개방시설
	유치원	—	—	900.0㎡	공공개방시설
	실내놀이터	—	—	300.0㎡	지역활성화시설
	작은도서관	$500\text{㎡} + (2,384\text{세대} \times 0.1\text{㎡})$	738.4㎡	1,000.0㎡	
	다함께돌봄센터	전용 66㎡ 이상	526.8㎡	700.0㎡	공공개방시설
	주민운동시설	500세대 이상 의무설치	—	1,500.0㎡	옥외면적제외
	어린이놀이터	$500\text{㎡} + (2,384\text{세대} \times 0.7\text{㎡})$	2,168.8㎡	2,500.0㎡	옥외면적제외
	주민공동시설	500세대 이상 의무설치	—	12,300.0㎡	
	공공문화센터	—	—	3,400.0㎡	공공개방시설
관리사무소		$10\text{㎡} + (2,384\text{세대} - 50) \times 0.05\text{㎡}$	126.7㎡	200.0㎡	
경비실		—	—	150.0㎡	

※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(제28조, 제55조의2), 서울특별시 주택조례(제8조의4, 별표1)

자.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(안)

1) 관련 법규

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4조 4항(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용)

－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(이하 "초과용적률"이라 한다)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.

(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)

2)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법정기준 면적산정

- 주택용지 면적 : 96,046.40㎡
- 예정법적상한용적률 : 299.76%
- 상한용적률 : 250.00%
-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확보 기준
 - = (예정법적상한용적률 - 상한용적률) × 50%
 - = (299.76% - 250.00%) × 50%
 - = 24.88%
- 연면적 확보 기준 면적
 - = 96,046.40 × 24.88%
 - = 23,896.97㎡ 이상 확보

3)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건설계획(안)

건립위치	부지면적	동수	세대규모 (전용)	세대수	비고 (연면적)
양천구 목동 904일대	122,825.3 ㎡	8동	49㎡형	19세대	1,318.22㎡
			59㎡형	133세대	10,921.96㎡
			74㎡형	30세대	3,059.10㎡
			84㎡형	75세대	8,672.25㎡
			합 계	257세대	23,971.53㎡

차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안)

구분	계획내용		비고
환경보전	자연환경	•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면적 확보	-
	생활환경	•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	
	사업시행시 환경영향	• 대기환경보전법, 폐기물관리법,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	
재난방지	수재해	• 계획구역의 입지상 한강변에 위치하나 기존 제방시설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음. 그러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	-
	산사태	• 해당사항 없음	
	화재	•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	

타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(안)

구분	적용범위		내용	비고
용도제한 을 통한 교육환경 보호	정비구역 전체		● 불허용도계획을 통한 유흥업소(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안마원)등 교육환경 위해시설 입지 금지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
	학교환 경 위생정 화 구역	절대 정화구 역	● 설정기준 :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● 전염병 요양소, 폐기물처리시설, 호텔, 게임제공업, 특수목욕장,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	교육환경보호 에 관한 법률 제8조, 시행령 제21조
		상대 정화구 역	● 설정기준: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	
			● 전염병 요양소, 폐기물처리시설, 특수목욕장,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● 호텔, 당구장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교육환경에 위해를 주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행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 가능	
통학권 보행안전 대책	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		● 지정기준 :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● 신호기·안전표지 설치, 도로부속물설치,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	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

카. 정비사업 시행계획(안)

구 분	정비사업 명 칭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신규	목동4단지 재건축정비구역	서울시 양천구 목동 904일대	-	증) 122,825.3	122,825.3	-
시행방법		시행예정시기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		비 고
재건축정비사업		구역지정 후 4년이내	현황 : 1,382세대 계획 : 2,384세대 (증) 1,002세대)			-

파.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

- 공람도서(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)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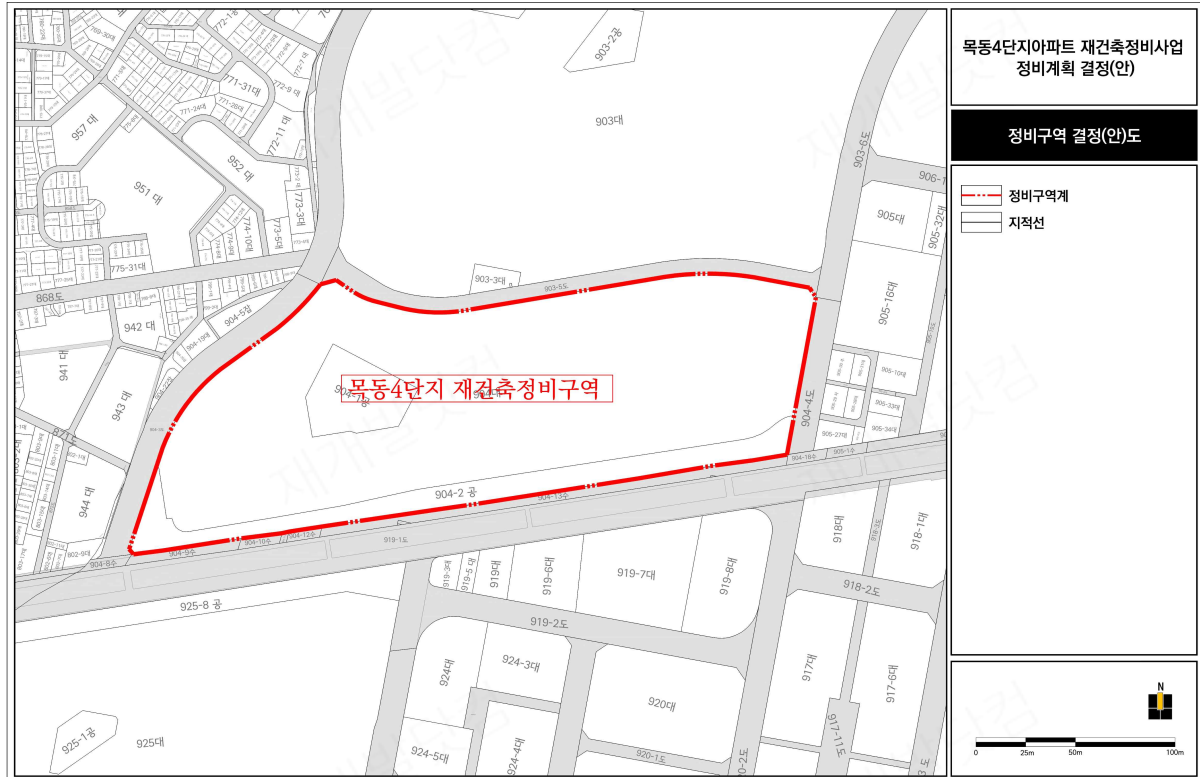
VI. 관계도면 : 불임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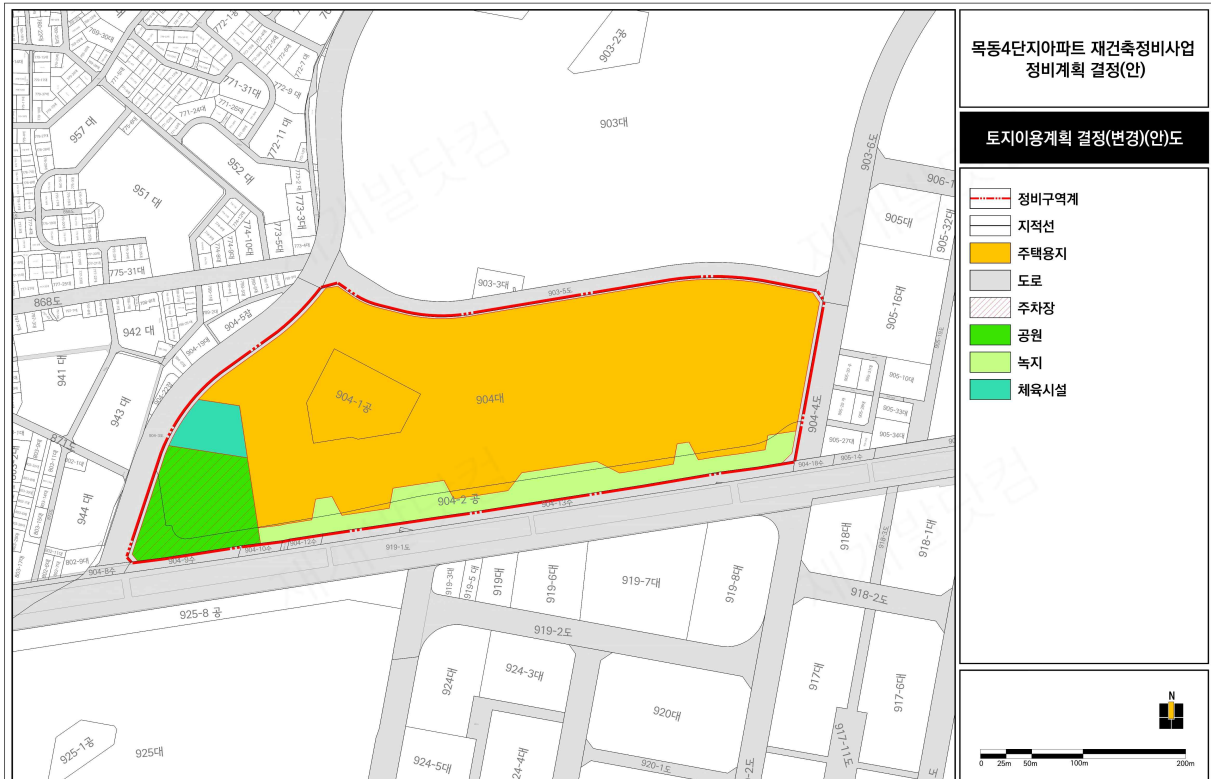
VII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
공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, 협의·심의 등 향후 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〈붙임〉 관계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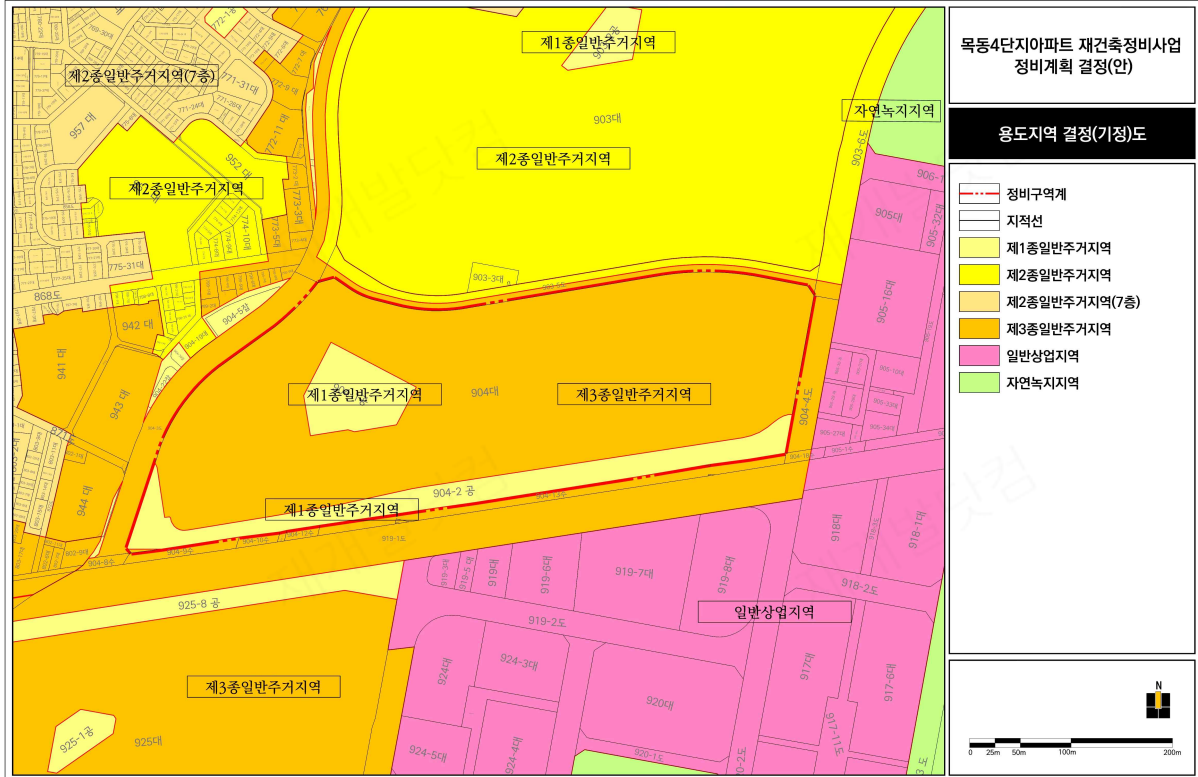
□ 정비구역 결정(안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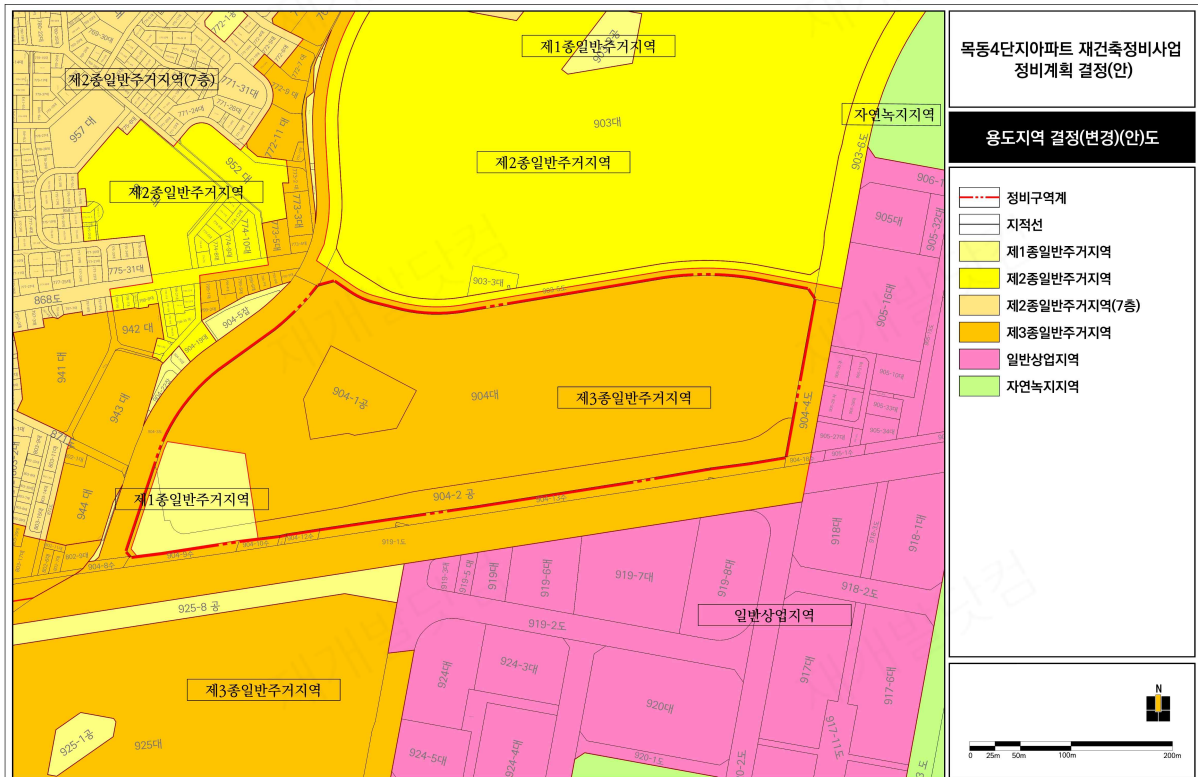
□ 토지이용계획(안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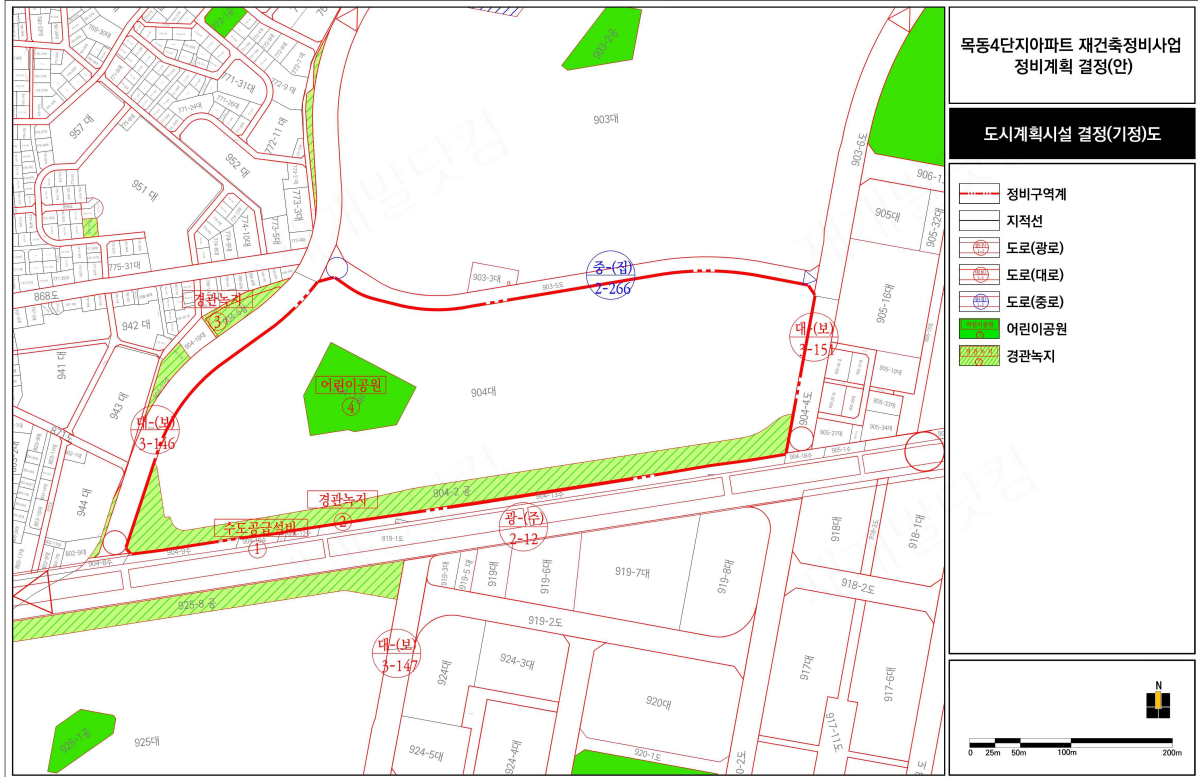
□ 용도지역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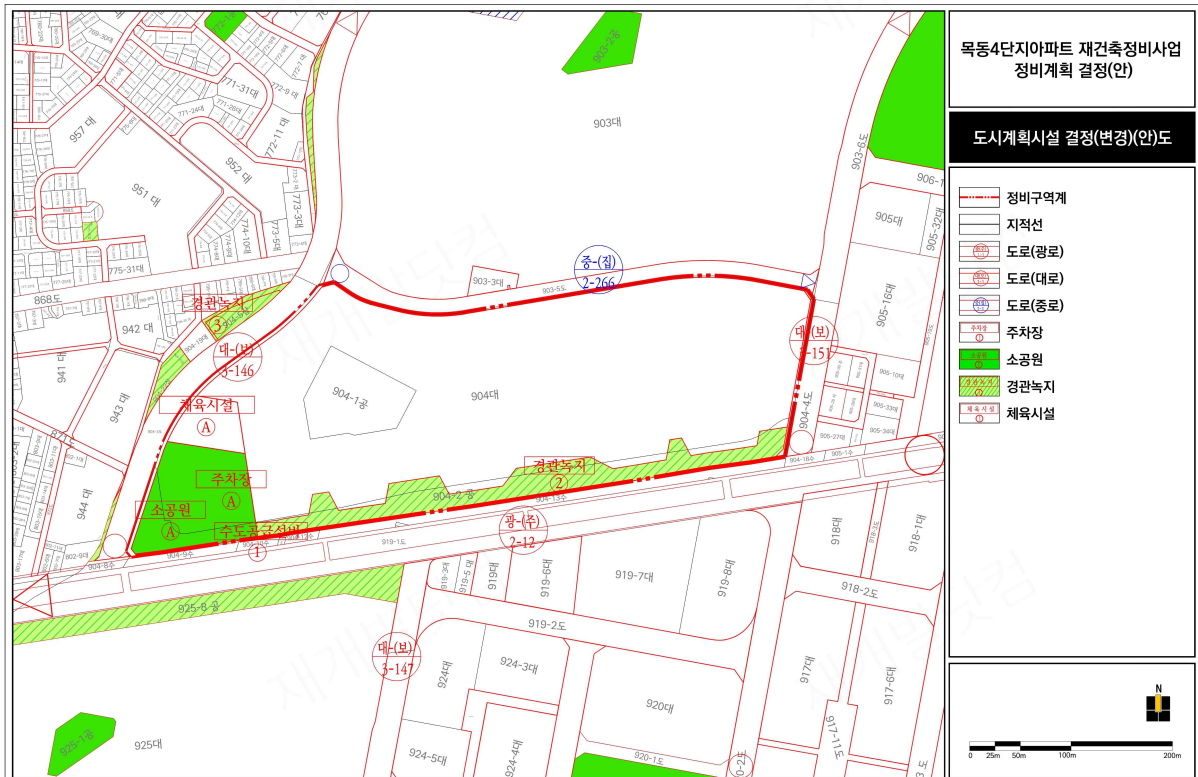
□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도



□ 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



□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(안)도



□ 정비계획 결정(안)도

